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전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장 범위, 위원장 직무, 의결 정족수 등 설치·운영 기준 규정(안 제2조)

나. 4급 이하 일반직 국가 공무원 및 연구직·지도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징계 권한 등을 통합특별시장 권한으로 함(안 제15조)

다. 중앙행정기관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간 이견 발생 시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조정(안 제16조)

라. 「초·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학·외국어·국제계열 등의 고등학교에 대해 교원구성·수업방식 자율화 등 특례 부여(안

제23조)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 교원의 교차지도를 위한 연수 과정운영 및 이를 이수한 교원을 통합운영학교에 우선 배치 등 실시(안 제24조)

바.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중학교 입학전형 실시(안 제25조)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보조 대상을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규정(안 제38조)

아. 국립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가능(안 제49조)

자. 분산에너지특화 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 등에 대해 국가의 기금 또는 예산 지원(안 제61조)

차.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문화산업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등에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달리 규정 가능(안 제7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 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

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및 산림청 차장(해당 기관에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부시장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1명

3. 통합특별시의 부교육감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통합특별시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1명

4. 도시개발과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3조,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위원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실무지원단)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실무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파견 요청)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

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통합특별시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1.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임면·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직·지도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징계,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광역행정의 조정) 국무총리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1. 통합특별시 도로·교통 및 운수 관련 사항

2. 통합특별시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통합특별시 수자원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특별시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특별재난의 범위) 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을 말한다)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에 해당하는 재난

2.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을 말한다) 중 통합특별시의 행정능력 또는 재정능력만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피해 또는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재난

제18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66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율학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와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이하 “통합특별시조례”라 한다)로 정한다.

제19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과 기간
2. 학교현장
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한다)과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한다)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 ·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
2.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학기와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일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26조에 따른 학년제
4.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그 조정 범위는 각각 같은 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와 구성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그 교원

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줄이는 경우 그 단축 수업연한은 같은 법 각 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③ 자율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규칙에는 법 제66조제1항·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2. 학년제

3. 교과용 도서의 사용

4.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5.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④ 자율학교에는 법 제6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자율학교에는 법 제6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제4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의 교과용 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 사회 교과 및 도덕 교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7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교과용 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⑧ 법 제66조제2항·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①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중 영재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칙
2.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3.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재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 3에 따른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⑤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당시 그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⑥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하는 영재학교의 학급 수, 학생 수 및 시설기준 등 영재학교의 지정 기준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재학교의 지정·설립,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6조부

터 제62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지정·운영위원회”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의3에 따른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로 본다.

⑧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외국어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인인 외국어 기간제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⑨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외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22조(영재학교의 운영성과 평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5년마다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성과 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영재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는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영재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안으로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3조(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의 고등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인인 외국어 기간제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자국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24조(학교의 통합운영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란 학생수가 200명 이하인 학교 중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차지도를 수행하고자 하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이수한 교원을 통합운영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운영 및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연수 내용, 연수 시간, 이수 기준 및 시행계획은 통합특별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의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 그 밖에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특색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아동 또는 학생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26조(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통합 특별시교육감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하여 설치하는 특수학교(이하 “병설 특수학교”라 한다)의 학급 수는 6학급 이상으로 한다.

② 병설 특수학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에 관하여는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 병설 특수학교의 교지(校地) 기준면적은 학생 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 규모, 특수학교를 병설하는 학교의 교지 면적, 지역 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교지 기준면적의 세부 기준은 통합특별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④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특수학교를 병설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의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장, 강당, 식당 등 일부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설비의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병설 특수학교의 학교급과 병설 특수학교를 두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교급은 학생의 연령 및 발달 특성,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설 특수학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정한다.

제27조(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외국인 투자 촉진, 국제교육 환경 조성,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28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73조제8항에 따라 국가나 통합특별시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지원 신청서에 운영 목적을 적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통합특별시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제29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73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조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이 통합특별

시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제30조(지역발전 인재 양성 특례)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상: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 지역대학의 재학생·졸업생, 구직자, 지역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종사자,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 타 지역 및 해외에서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문인력 등 우수 인력의 범위 및 자격 요건
2. 방법: 장학금·학자금 지원, 연구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취업·창업 지원, 주거·교육·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등 통합특별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방법 및 기준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우수 인력 양성 및 지역 내 정착유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따라 마련하고, 해당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포함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통합특별시교육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1조(지역 특화 분야 학교 특례 적용 요청 절차)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하려는 경우 미리 상대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2조(교육기관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의 운영) ① 법 제8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지역전략산업 분야와 연계된 교과 또는 과목의 공동 개발
2.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업 및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대학·연구기관·산업체 전문가의 수업 협력
4. 그 밖에 지역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역할분담)

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의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장: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

2. 통합특별시교육감

가.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승인

나. 직업교육, 진로교육 등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의 연계 강화

다. 학교와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 교육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대학

가.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나. 지역산업혁신 캠퍼스 내 공동 연구 및 기술 이전

다. 고등·평생교육 연계 및 산·학·연 협력 강화

4. 연구기관 및 산업체

가. 현장실습, 인턴십 및 취업연계 등 산업현장 기반 교육 지원

나. 산업체 전문가의 강사 파견

다.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②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4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법 제10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제1호나목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사항을 말한다.

제35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2.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4.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제36조(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협의)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06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공공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목적
3.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5.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
6.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자료
7. 공공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7조(보조 또는 용자의 신청) 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서비스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이하 “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허가·면허·등록 번호 및 그 일자
3. 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그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지방관리항만 지원 대상 등) ①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은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보조 비율, 절차 및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9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주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동반 이주 자녀의 전입학 및 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1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항만·도로·용수·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변경·폐지 등으로 인한 계획의 변경
3. 각 사업 또는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의 추가 또는 폐지

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제43조(시행자) ① 법 제15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을 개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② 법 제15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란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4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 나.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사업
 - 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구사업
2.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사업

다. 전기통신업

라.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마. 정보서비스업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바.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차.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사업

카.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 및 관광공
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
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은 제외한다.

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업

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
파크업

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관광식당
업

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머.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업

② 법 제16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일 것
3. 제2호에 따른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4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 법 제1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법 제1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46조(투자진흥지구의 자금 지원 기준 및 절차)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통합특별시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15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1. 고용창출 규모
2. 첨단과학기술 개발효과
3.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4. 그 밖에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47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67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67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67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법 제167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각과 임대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및 명칭
2. 이전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3. 이전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4. 이전 대상 기업의 사업 규모
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0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174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객관적·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원 중 1명을 단장으로 지명하여 제5항에 따른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각 1명
 2. 통합특별시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1명
 3. 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협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8명(통합특별시장의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통합특별시장의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
- ⑤ 평가단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평가계획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2.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의견 청취 및 조정
- ⑥ 평가단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서에 대하여 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⑧ 평가단은 제7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통합특별시장에

게 통보가 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1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 권한의 위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6조제2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지정된 특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1. 특화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관리에 관한 권한. 이 경우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 특화단지의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권한
3. 특화단지의 조성·운영과 관련된 인가·허가·승인·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하는 권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협의를 포함한다)
4. 특화단지 운영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권한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통합특별시장은 특화단지의 조성·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 조성·운영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3.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관리 계획
4. 인허가등의 처리 지원 및 관계기관 협의 방안
5. 입주기관 지원 및 기업유치 촉진 방안
6. 시행계획의 추진체계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2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법 제194조에서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2.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도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제53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를 말한다.

제54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2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

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3. 법 제16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4. 법 제27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5. 법 제351조에 따른 문화지구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제55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법 제2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에 사용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특별시 개발과 관련된 법령
2. 기본계획과 이와 관련하여 통합특별시가 수립·작성하는 세부 사업추진계획
3. 법 제15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에 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자 등 민원인의 질의·고충 처리 및 상담
5. 법과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고시 및 통지

6. 그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이 요청하면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시·군·구 특성화산업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군·구 특성화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별 특성화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 산업구조 및 기업 집적도
2. 지역 자원 및 연고산업 기반
3.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규모 및 성장 가능성
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성
5.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6. 그 밖에 시·군·구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특성화산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중소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군·구,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시·군·구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성화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 전략
2.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
3. 기술개발, 사업화, 기업성장 및 투자유치 지원 방안
4. 산·학·연 협력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지역혁신기관 연계 방안
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
7. 그 밖에 시·군·구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제58조(특성화산업 지원 및 육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 특성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2.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3.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5. 투자유치 및 기업 유치 지원
6. 산·학·연 협력 및 공동 연구 지원
7.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
8. 그 밖에 특성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7조제3항에 따라 시·군·구별 특성화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 또는 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시·군·구 특성화산업에 대한 성과평가) ① 통합특별시장은 특성화산업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는 지원계획 조정 및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60조(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20조제5항에 따라 전남광주 중소기업 복지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근로복지
증진 관련 단체

제61조(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지원) 법 제2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
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
화지역 내에서의 분산에너지사업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투자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에너지 자립도시 내 재생에너지 공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장이 요청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62조(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의 절차와 방법) ① 법 제2
3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
다.

1. 사업의 명칭·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위치, 범위 및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 및 관계 기관

4.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협의 또는 행정지원 사항

5. 전력계통 접속, 전력설비 또는 전력선로 설치 등 사업 추진방안
6. 자원조달계획 및 기대효과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 간 인허가 절차의 일괄 협의 및 신속 처리 사항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력계통 접속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의·조정
4.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또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23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지원 신청 절차,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관계 기관 협의 절차, 그 밖에 통합특별시 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63조(망사용료 납부) ① 법 제235조제4항에 따른 망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전력망 구축 비용
2. 전력망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3. 전력망과 연계되는 공동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이용 비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망 확충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망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사용료 감면에 반영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송전망 설치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 공급 안정화 등으로 사회·경제적 편익이 확대되는지 여부
2. 통합특별시 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유치로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지 여부
3.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또는 법 제238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망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망사용료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감면율, 납부절차 및 납부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법 제24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사전검토 대상인 사업
2.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른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업

제65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 ① 법 제2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용 지원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세부 범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를 따른다.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66조(반도체·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 ① 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다.

1. 반도체 · 방위산업 연계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도입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추진 및 이에 필요한 지원
2. 반도체 · 방위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간 공동연구 · 기술이전, 사업화 및 정보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 운영 지원
3. 반도체 · 방위산업 연계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시험 · 평가, 실증, 표준화 및 기반시설 구축 지원
4. 반도체 · 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훈련, 현장실습 및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5. 국내외 시장 진출, 수요 연계, 판로 개척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반도체 · 방위산업 연계 신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한 특례 지원사항 등) ① 법 제261조제3항에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차전지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산업생태계 확산을 위한 시책

의 수립·시행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간 공동연구, 기술이전, 실증 및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지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 투자, 시설 확충 및 집적화 촉진을 위한 지원
4.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에 대한 지원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및 재직자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6.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평가, 인증, 표준화 및 실증사업의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관계 기관 간 협력 지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어장·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양식산업발

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연도의 1월 31일까지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그 개발계획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한 세부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수면에 대해 양식업 면허 및 어업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과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수면

2.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식업권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양식업권을 포기하려는 수면

제69조(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 등) 법 제3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전략산업(법 제185조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학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학과일 것

2. 지원자격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부설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할 것

3.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선발할 것

제70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①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를 관할하는 국립대학교의 장은 법 제341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승인된 특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성과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에 필요한 사

항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 제59조의11 및 제59조의12를 따른다.

제71조(수산·해양 교육·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 ① 법 제341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는 수산·해양 관련 교육·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장
2. 양식장
3. 항만 및 어항
4. 연안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은 다음 각 호의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위과정 교육
2.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3. 수산·해양 산업 종사자 재교육 과정
4. 연구개발 인력 양성 프로그램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을 실시하려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 목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2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택공급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

별시 관할구역 내에서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법 제344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정하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에게 공급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3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제73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특례) ① 법 제3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시설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48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제74조(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원) ①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관광산업 육성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 이동편의 증진사업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4. 관광사업자 창업 및 운영 지원사업
5. 관광기업 육성사업
6.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0조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 비용 지원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3. 관광사업자에 대한 창업·운영 자금 융자 지원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관광마케팅 및 홍보 지원
5.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5조(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 특례 적용 지역) 법 제36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특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특구를 말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
진흥지구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제76조(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81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이 제출된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의

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7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38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1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1.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78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사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
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표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③ 법 제38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중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숲속야영장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
설. 다만, 산악스키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은
제외한다.

제79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법 제387조제1항에서 “도로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 및 통합특별시는 법 제38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
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등 유통·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

4.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0조(역사문화특구 내 국·공유재산의 특례) ① 법 제39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통합특별시장이 특구 조성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자. 다만,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의 조성 또는 운영에 직접 필요하고, 해당 재산 외에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며, 그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 제393조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공유재산의 경우 통합특별시장에게, 국유재산의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요청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통합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며, 판매·영업·임대·광고 또는 그 밖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사용기간, 관리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역사문화특구 특례의 범위) ① 법 제39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통공연
2. 문화유산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문화유산의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행사
4. 문화유산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무형유산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특구 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전승활동 및 전수교육 지원
2. 무형유산 조사·연구 및 기록화
3. 무형유산 활용 공연·전시 및 문화콘텐츠 개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 여부는 통합특별시장이 법 제392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2조(역사문화특구 특례 적용의 절차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93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 법 제39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통합특별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역사문화특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우선 지원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 및 제70조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광주광역시

시”를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7조 후단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제2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주광역시장”을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광주광역시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9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25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4절의 제목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

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북도”로 한다.

별표 1의 광주광역시경찰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전라남도경찰청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 중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는”으로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전파관리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⑨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세관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광양세관, 목포세관 및 여수세관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⑩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호남지방데이터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⑪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육군제31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⑫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광주지방보훈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광주지방보훈청의 전남동부보훈지청 및 전남서부보훈지청의 보훈지청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⑬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주인권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특별자치도
------------	-----------	-------------------

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⑮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전남대학교의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및 국립순천대학교의 소재지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광주교육대학교의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5의 전남대학교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광주교육대학교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⑯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국세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⑰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는”으로 한다.

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①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다목1) 및 3)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
시”로 한다.

②⑩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기상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
특별시”로 한다.

②⑪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별표 1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
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
합특별시”로 한다.

②⑫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금지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
시”로 한다.

②⑬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란 중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남부권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부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을 제외한 전 지역
-----	-----------	--

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군은 제외한다)”로 한다.

㉖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권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 및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㉗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제22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및 제77호의 대상 구간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광주광역시 및 이와 근접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으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남해안권의 시·도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내륙권의 백두대간권의 시·도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표 내륙권의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고령군

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호남권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호남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

㉕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의 관할 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낙동강유역은 제외한다), 전북특별자치도(낙동강유역 및 금강유역은 제외한다), 경상남도 중 섬진강유역, 제주특별자치도
--------------------	-----------	--

㉓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관할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주관할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	-----------------------------

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㉖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 교정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주지방	전남광주	광 주 교 도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흥동
교 정 청	통합특별시	순 천 교 도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면 선평리
		목 포 교 도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장 흥 교 도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전 주 교 도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군 산 교 도 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제 주 교 도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2동
		해 남 교 도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정 읍 교 도 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별표 2의 광주소년원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4의 광주보호관찰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5의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㉟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립나주병원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㉟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라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서울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울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의 남부광산안전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㊲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단의 광주지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④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④⑪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목포선원노동위원회 및 여수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④⑫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광역시(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를 “광역시(대전광역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치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경기도는 제외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자치구는 제외한다)·도(경기도는 제외한다)”로 한다.

④⑬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호남119특수구조대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④⑭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1의 마을 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5의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각 목 외

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0. 기선권현망어업	54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
	14건	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계선 사이의 해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해역

별표 7 제1호나목, 라목 및 마목의 금지기간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 및 라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나목 및 바목의 금지기간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바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금지기간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다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표의 주5) 및 주7)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제1호 및 제2호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표의 부도 4 중 “전라남도”와 “광주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④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나목 및 다목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 본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4 제4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5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8 부도 1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9 제11호나목부터 처목까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가목 및 나목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표의 부도 1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11 부도 1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④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④⑦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④⑧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 제3항·제5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제31조제8호,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주광역시”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 및 그 밖에 조성사업의”를 “조성사업의”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④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5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5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53>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남지방우정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54>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한빛원전지역사무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

합특별시”로 한다.

<55>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의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및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의 대상 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5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5)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2권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5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관할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5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조달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5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제79조의3제1항제2호, 제79조의8제1항제2호 및 제79조의10제2항제2호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군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2의 구분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단의 광주지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6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2>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시·도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의 시·도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및 나목2)의 범위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 및 나목2)의 범위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도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의 전라남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6>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 제1호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3)의 중학교의 소재 지역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호 4)의 중학교의 소재 지역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호 가목3)의 진료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의 광역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호 나목4)의 광역권별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란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 제1호3)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3)의 의무복무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표 제2호3)의 의과대학 소재지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3)의 의무복무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7>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의 국립목포검역소 및 국립여수검역소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국립목포병원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9호 및 제20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7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1>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광주광역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전북특별자치도란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로 하며, 같은 호 중 전라남도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경상남도란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만 해당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72>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위치란 및 같은 호 파목의 수상구역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부터 더목까지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서해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2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목포해양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및

여수해양경찰서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란 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어업관리단의 서해어업관리단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지방해양수산청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332